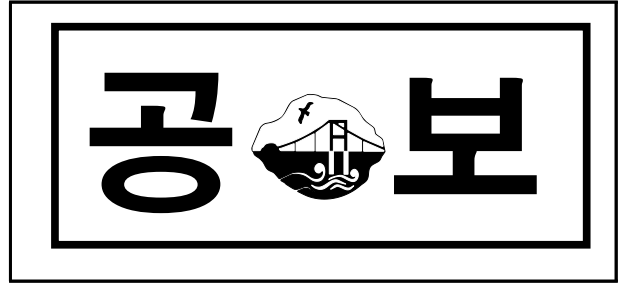


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686호 2021. 3. 9.(화)

고 시

- 남해군 고시 제2021-23호 하천점용허가 (변경)고시 1
- 남해군 고시 제2021-24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 2

공 고

- 남해군 공고 제2021-221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
- 남해군 공고 제2021-266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(안) 입법예고 11
- 남해군 공고 제2021-279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
- 남해군 공고 제2021-280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3
- 남해군 공고 제2021-293호 남해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
- 남해군 공고 제2021-304호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1
- 남해군 공고 제2021-306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
- 남해군 공고 제2021-317호 공인 등록 공고 59
- 남해군 공고 제2021-327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 60

회 략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해군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860-3045, 행정 3045)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21 - 23호

하천점용허가 (변경)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23일

남 해 군 수

1. 하 천 명 : 화천(지방하천)
2. 성 명 : 하점*
3. 주 소 : 부산광역시 진구 월드컵대로
4. 점용목적 : 태양광 발전소 진입교량 건설
5. 점용위치 :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-1번지 일원
6. 점용면적 : 영구점용 427㎡, 일시점용 1,233㎡→1,983㎡
7. 최초허가일 : 2018. 2. 21.
8. 점용기간 : 2020. 8. 21. ~ 2022. 10. 31.

남해군 고시 제2021 - 24호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

『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합니다.

2021년 2월 26일

남 해 군 수

- 1. 저수지 명칭 : 죽전저수지
- 2. 저수지 관리자
 - 가. 관리자 : 남해군수
 - 나. 주소 : 경남 남해군 망운로 9번길 12
- 3. 저수지의 위치 및 규모

시설명	위 치	시설 제원				지정 사유	관리자	비 고
		저수량 (천㎥)	제당 길이(m)	제당 높이(m)	수혜 면적(ha)			
죽전	남면 죽전리 12-1	7.6	61.5	11.2	14	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	남해 군수	

- 4. 지정사유
 - 저수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주요 부재 결함 발생으로 홍수 대응 능력 부족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생명·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.
- 5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 -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※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.

6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: 2021. 02. 26.

7. 기타문의 :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(055-860-3303)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21 - 221호

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3일

남 해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
- 2. 개정이유
 신축(예정)된 면단위 생활체육관,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를 개정하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.
- 3. 주요내용
 - 가. 체육시설(면단위 생활체육관, 파크골프장)을 추가로 정의 (제2조)
 - 나.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의 감면 반영(제13조)
 - 1)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
 - 파크골프장 추가
 - 다. 사용료의 조정 등 (별표)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. 3. 4. ~ 2021. 3. 25.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2,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체육진흥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8662, 팩스 055-860-3749,
e-mail : everhwang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(전화 055-860-866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자치법규명

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의견
제출자

성명(명칭)

전화번호

주소

자치법규안 내용

찬성여부

의견

찬성

반대

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성명 :

(서명 또는 날인)

남해군수 귀하

남해군 규칙 제 호

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그라운드골프장”을 “그라운드골프장, 면단위 생활체육관, 파크골프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3항제10호 중 “스포츠파크 야구장”을 “스포츠파크 야구장, 파크골프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체육시설”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, 면 공설운동장(체육공원), 실내체육관(족구장 포함),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(천연잔디구장, 인조잔디구장, 야구장, 풋살구장, 테니스장,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), 공설 테니스장, 생활체육관, 게이트볼장, 금해정, 무도관, <u>그라운드골프장</u> 등을 말한다.</p> <p>2. ~ 11. (생 략)</p> <p>제13조(사용료의 감면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0. 군민이 실내체육관, <u>스포츠파크 야구장</u>을 사용하는 경우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라운드골프장, 면단위 생활체육관, 파크골프장</u> --.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사용료의 감면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스포츠파크 야구장, 파크골프장</u>----</p>

[별표]

1. 체육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구 분			기 준	요 금(부가가치세 포함)		
				평일	토.공휴일	
공설운동장	남해읍 (천연잔디)	필드	1일 1회 3시간내	330,000	380,000	
		조명	"	90,000	90,000	
		트랙		무료	무료	
면 공설운동장 (체육공원)	천연잔디구장	필드	1일 1회 3시간내	220,000	270,000	
	인조잔디구장	필드	1일 1회 3시간내	50,000	70,000	
실내체육관	다목적경기장	체육경기	1회/2시간	50,000	60,000	
		체육이외	1회/2시간	150,000	200,000	
		냉·난방시설	"	30,000	30,000	
		복싱장	-	무료	무료	
		스포츠댄스장	-	무료	무료	
스포츠파크	주경기장 (천연잔디)	필드	1일 1회 3시간내	330,000	380,000	
		조명	"	80,000	80,000	
	바다,나비, 치자,비자 (천연잔디)	필드	"	220,000	270,000	
		조명		30,000	30,000	
	나비,비자 (인조잔디)	필드	"	50,000	70,000	
		조명	"	20,000	20,000	
	야구장	인조구장	"	130,000	160,000	
		조명	"	110,000	110,000	
	풋살 경기장	필드	-	무료	무료	
	테니스장	코트	-	무료	무료	
족구장	군일원	구장	-	무료	무료	
공설 테니스장	남해읍	코트	1회 3시간/면	11,000	16,500	
생활체육관 (탁구장)	남해읍	개인	1회/3시간	2,000	3,000	
		월회원	개인	1회/3시간	30,000	30,000
			단체	1회/3시간	20,000	20,000
생활체육관 (사격장)	남해읍	-	1회/1시간	10,000	15,000	
게이트볼장	읍면	-	-	무료	무료	
그라운드 골프장	읍면	-	-	무료	무료	
금해정	궁도장	사대	1일/1회	20,000	25,000	
무도관	검도관	-	1회/3시간	30,000	40,000	
	유도관	-	1회/3시간	30,000	40,000	
면단위 생활체육관	다목적경기장	체육경기	1회/2시간	20,000	30,000	
		체육이외	1회/2시간	50,000	60,000	
파크골프장	읍면	회원	월 사용료	30,000	30,000	
		비회원	일반인	1회/2시간	4,000	4,000
			청소년		3,000	3,000
			어린이		2,000	2,000
		장비대여		1,000	1,000	

○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.

2. 야외공연장 사용료

시설물별	기 준	요금(평일)	비 고
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	1일 1회 (4시간 기준)	100,000원	토·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%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

남해군 공고 제2021 - 266호

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(안) 입법예고

「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3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2. 폐지이유

- 「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전면 개정(2021.02.09.) 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통합하여 개정 조례 시행규칙 폐지가 필요함

3. 주요내용

- 「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3월 16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남해군청 주민복지과

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052, 팩스 055-860-3882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사행정팀(전화 055-860-3852)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규칙 제 호

**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시행규칙 폐지규칙**

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해군 공고 제2021 - 279호

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4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2. 개정이유

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 있고 실질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, 통합방위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당위성 추가 반영(안 제1조)

나. ‘민방위계획’ 심의안건 추가(안 제2조제3호의2)

다.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(부대)명칭 변경(안 제3조제2항)

- 진주보훈지청장→경남서부보훈지청장

- 국군기무사 611기무부대 남해담당관→군사안보지원부대 남해담당관

-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→통영해양경찰서장

라.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4항)

- 출석회의→화상·전화·통신수단 이용 회의 개최 확대

마. 협의회 분야별 간사 구체화(안 제5조)

-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: 재난안전과장
- 작전담당 간사 :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작전과장, 남해경찰서 정보보안과장
- 예비군담당 간사 :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
- 소방담당 간사 :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장

바.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지원본부 상황실(본부상황실+군·경합동상황실)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
- 상황실장 변경 : 기획감사실장→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

사. 군·경합동상황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5항)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3월 16일까지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432, 팩스 055-860-3727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민방위팀(전화 055-860-34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” 를 “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및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에 따라 남해군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·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서” 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협의회의 기능)” 을 “(심의사항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“향토예비군·민방위대” 를 “예비군·민방위대” 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민방위계획

제3조제2항 중 “진주보훈지청장, 국군기무사 611기무부대” 를 “경남서부보훈지청장, 군사안보지원부대” 로, “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” 을 “통영해양경찰서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(이하 “화상회의 등” 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간사)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: 재난안전과장
2. 작전담당 간사 :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작전과장, 남해경찰서 정보보안과장

3. 예비군담당 간사 :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

4. 소방담당 간사 :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장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군 지원본부장” 을 “지원본부의 본부장” 으로, “지원본부장은 읍·면장” 을 “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·면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군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” 을 “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두고, 읍·면 소속으로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읍·면 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③ 지원본부는 군청 내에 두고, 읍·면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.
- 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 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군·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 이 경우 군·경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이 된다.
- ⑨ 읍·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·운영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 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통합방위법」 및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에 따라 남해군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·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서 -----.</p>
<p>제2조(협회의 기능)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향토예비군·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대책</p> <p>다·라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4·5. (생략)</p>	<p>제2조(심의사항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예비군·민방위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·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2. 민방위계획</p> <p>4·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협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해군의회 의장,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, 남해경찰서장,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, 진주보훈지청장, 국군기무사 611기무부대 남해담당관,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,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, 남해소방서장, 남해군 재향군인회장으로 하고,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협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경남서부보훈지청장, 군사안보지원부대 남해담당관-----</p> <p>----- 통영해양경찰서장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5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.</u></p> <p><u>제7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군수 및 읍·면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군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·면 지원본부장은 읍·면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지원본부는 군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둔다.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(이하 “화상회의 등” 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제5조(간사)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: 재난안전과장</u> 2. <u>작전담당 간사 :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작전과장, 남해경찰서 정보보안과장</u> 3. <u>예비군담당 간사 :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</u> 4. <u>소방담당 간사 :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장</u> <p><u>제7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두고, 읍·면 소속으로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읍·면 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지원본부의 본부장----- --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·면장---</u></p> <p>③ <u>지원본부는 군청 내에 두고, 읍·면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(생 략)</p> <p>⑤ <u>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⑥ <u>군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0개 이내의 반으로 구성하되,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.</u></p> <p>⑦ · ⑧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군·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 이 경우 군·경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이 된다.</u></p> <p>⑥ <u>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-----</u> -----.</p> <p>⑦ ·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읍·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·운영한다.</u></p>

남해군 공고 제2021 - 280호

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「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 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(단위 단가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4일

남 해 군 수

1. 대상지역 : 남해군 하수처리구역 내
2. 부과대상
 -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
 -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
3.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
 -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: 2,320,000원/m³
 -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: 2,945,000원/m³
 - ※ 다만,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4.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
 - 「하수도법」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, 「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」 제15조(개별

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및 제17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
- ※ 원인자부담금(원) = 1일 오수발생량(m³) ×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(원/m³ · 일)
- 「하수도법」 시행령 제2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)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[환경부고시 제2019-215호, 2019. 11. 25.]」을 기초로 산정

5. 시 행 일

- 이 부과기준은 2021년 2월 24일 이후 부과부터 시행
-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

6. 기타 문의사항 : 남해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(☎ 055-860-3333)

남해군 공고 제2021 - 293호

남해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6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

2. 개정이유

군 조직개편에 따라 「남해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지원범위를 추가·보완하여 남해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(안 제9조제2항제5호)
- 나. 공공(학교)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(안 제9조제2항제28호)
- 다.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 사업(안 제9조제2항제29호)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3월 18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30,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축산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908, 팩스 055-860-3981
이메일 yunji88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(☎ 055-860-3908)으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남해군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(WTO), 자유무역협정(FTA)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,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4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5. 4.>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2.5.4. , 2017. 12. 20.>
2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산물 생산자단체,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2.5.4. , 2017. 12. 20.>
3. “농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12.5.4. ,2017. 12. 20.>
4. “어업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2. 5. 4., 2017. 12. 20.>
5. “어업인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, 어촌계, 수산업회사법인, 수산물 생산자단체,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2. 5. 4., 2017. 12. 20.>
6. “어촌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12. 5. 4., 2018. 8. 17.>

- 7. “농어업”이란 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. <개정 2012. 5. 4.>
- 8. “농어업인”이란 제2호와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. <개정 2012. 5. 4., 2015. 12. 28.>
- 9. “농어촌”이란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. <개정 2012. 5. 4., 2015. 12. 28.>
- 10. “농어업인 단체”란 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 <신설 2015. 12. 28.>
- 11. “생산자단체”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.<개정 2017. 12. 20.>
 -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
 - 나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.>

제4조(농어업인의 책무) 남해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 농어업인은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2., 2015. 12. 28.>

제5조(소비자의 책무)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·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본방침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 육성·발전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.>

- 1.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·지원한다. <개정 2015. 10. 2.>
- 2.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- 3.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.

- 4.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5. 농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·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. <개정 2015. 12. 28.>

제7조(지원 범위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4., 2015. 10. 2., 2015. 12. 28., 2018. 8. 17.>

- 1.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2015. 10. 2.>
- 2.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
- 3.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<신설 2018. 8. 17.>
- 4.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2012. 5. 4., 2015. 12. 28., 2018. 8. 17.>

② 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제8호·제10호·제11호에 따른 자와 농어촌 마을회로 한다. <신설 2015. 12. 28.> <개정 2018. 8. 17.>

제8조(농어업인 소득보전 등)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2., 2015. 12. 28.>

- 1. 쌀·마늘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
- 2.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지원 <개정 2015. 12. 28.>
- 3.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
- 4.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의 확대 사업
- 5.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의 확대 사업
- 6.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
- 7.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<개정 2015. 10. 2., 2017. 12. 20.>

- 8.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<신설 2018.8.17.>
- 9.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2015. 10. 2., 2018. 8. 17.>

제9조(농어업 경쟁력 강화) ① 군수는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2., 2015. 12. 28.>

- 1. 친환경·고품질·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
- 2. 농수산물의 농어업인 단체·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 <개정 2015. 12. 28.>
- 3.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·과실·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
- 4.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
- 5.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농산물(수산물)종합가공센터 운영
 - 나. 농수산물 가공기반 조성 관련 사업
 - 다.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에 관한 사항
- 6. 농수산물의 집하장, 포장재 등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<개정 2015. 12. 28.>
- 7. 남해 특산물 유통·판매 촉진사업, 운영비 및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 <신설 2015. 12. 28.>
- 8. 6차 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운영비 지원 <신설 2015. 12. 28.>
- 9.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<개정 2015. 12. 28.>
- 10. 마을어장 개발사업, 수산종묘 방류사업, 해삼·전복 양식사업 <개정 2015. 12. 28.>
- 11. 품종개발,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보급사업 <개정 2015. 12. 28.>
- 12.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<개정 2015. 12. 28.>
- 13.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<개정 2015. 12. 28.>
- 14.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손실분담 <신설 2012. 5. 4.> <개정 2015. 12. 28.>
- 15. 연 소득 1억원 이상 농가 육성
- 16. 식량 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다수확·안전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
- 나.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·영농자재
- 다. 품종 비교 전시·선발·증식을 위한 영농자재
- 라. 그 밖에 동계작물 및 밭작물 면적 확대를 위한 영농자재

17.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새 소득 원예 특화작목 개발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
- 나. 원예작물(채소, 과수, 화훼, 특용 등) 재배단지 육성

18. 남해 마늘·시금치 산업의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마늘·시금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
- 나. 명품 남해 마늘·시금치 생산과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
- 다. 마늘의 종구 개량·증식
- 라. 마늘 생력화 농기계 및 마늘 건조·저장시설
- 마. 마늘·시금치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
- 바. 마늘·시금치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마늘·시금치의 재배장려와 경영안정자금 지원

19. 농어촌 생활문화 및 농어촌 가치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선도 농촌여성전문가 양성 및 활동
- 나. 농촌문화 부가가치 창출
- 다.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
- 라. 소비자 농업인 직거래 활성화

20.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선도 축산 경영인 양성 및 활동
- 나.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 자금
- 다.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활동 및 자금

21.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한우 생산 농가 경영 안정
- 나. 한우 개량·증식·보존·육성 및 발전

22. 낙농 및 그 밖에 가축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
- 가. 낙농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
- 나.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
- 다. 흑염소 사육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

- 23. 축산환경 구조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 - 가.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기자재
 - 나. 축사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기자재
 - 다.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자재
- 24.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 - 가. 동·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자금
 - 나. 볏짚 사일리지 제조 자금
 - 다. 사일리지 품질 검사 활동 및 자금
 - 라. 조사료 생산장비·기자재
- 25. 가축 위생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<신설 2015. 12. 28.>
 - 가. 가축방역 교육 및 방역협의회 운영
 - 나. 가축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역, 기술
 - 다. 동물등록 대행 및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
 - 라.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자재
- 26. 어항 환경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, 폐유저장시설사업, 유류보관시설, 폐각처리 등 <신설 2015. 12. 28.>
- 27.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위해생물 구제작업 <신설 2015. 12. 28.>
- 28. 공공(학교)급식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
 - 나.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화 교육, 홍보 및 시설·장비 지원
 - 다. 공공급식 지역산 우수 식재료 확대 장려금(차액) 및 포장재 지원
 - 라. 공공급식 차량 배송비 지원
 - 마. 공공급식 식생활 개선 교육 및 시설 지원
 - 바.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
 - 사.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육성
 - 아.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
 - 자.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
 - 차. 초등돌봄교실 간식(도시락) 지원
- 29.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 사업 등

제2장 분야별 지원사항

제10조(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 <개정 2015. 12. 28.>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2., 2015. 12. 28.>

1.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부상·질병·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·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<개정 2015. 10. 2.>
2.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·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
3.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<개정 2015. 12. 28.>
4.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
5.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
6.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개정 2015. 10. 2.>

제11조(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) <개정 2015. 12. 28.> ①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.>

② 군수는 농어촌의 교육·문화·보건·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2.>

③ 군수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2., 2015. 12. 28.>

1. 농촌 정주기반 확충, 전원마을 조성,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
2.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
3.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
4.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
5. 농어업인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또는 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<개정 2015. 12. 28.>
6.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
7. 그 밖에 농어촌 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개정 2015. 12. 28.>

제12조(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)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,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- ③ 군수는 농어업의 선진화·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8.>
- ④ 군수는 국내외 선진 농어업기술 벤치마킹, 신기술 교육, 농수산 가공품 개발 등 농어업·농어촌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후계 인력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, 농어업 선도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28.>
- ⑤ 제4항의 지원 단체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. <신설 2015. 12. 28.>

제3장 지원 절차

제13조(신청)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4.>

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원사업 결정)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해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 다만,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 12. 20.>

제15조(지원금 교부)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·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.>

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통지, 교부방법,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, 2015.10.2.>

제16조(관리감독) ①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장 <삭제 2017. 12. 20.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 12. 20.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뜻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다음과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군의 책무)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</p> <p>② 군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군수는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농어업인의 책무)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농어업인의 책무) 남해군(이하 “군” 이라 한다)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농어업·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) 군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 육성·발전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	<p>제6조(기본방침) 군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지원 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군내 농어업·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7조(지원 범위) ① 군수는 ----- ----- ----- ----- 사업비의 ----- -----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지원의 대상자는</u> <u>군내에</u>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 제8호, 제10호, 제11호에 따른 자와 제9호에 따른 마을회로한다.</p> <p>제9조(농어업 경쟁력 강화) ① <u>군은</u>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군수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</u></p> <p>6. ~ 27. (생 략)</p>	<p>② <u>지원 대상은</u> ----- ----- <u>제2조제8호·제10호·제11호</u>----- ----- <u>농어촌 마을회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농어업 경쟁력 강화) ① <u>군수는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</u> <u>가. 농산물(수산물)종합가공센터 운영</u> <u>나. 농수산물 가공기반 조성 관련 사업</u> <u>다.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2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) ① <u>군</u>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 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 록 자금 지원,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12조(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) ① <u>군수</u>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지원사업 결정)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<u>남해군 남해군</u> 농업·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 다만, 재해로 인한 복 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 을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지원사업 결정) ----- ----- <u>남해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.</p>

남해군 공고 제2021 - 304호

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」

2. 개정 이유

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구성 위원을 우리군 직제에 부합되도록 현행화하고 일부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심의회 위원 현행화 : 청사신축추진단장 추가, 사업소장 삭제(안 제3조)
- 나. 안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다. 구분 실익이 없는 정례회와 임시회 소집 조항을 정비하고, 안건이 긴급하거나 관례적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6조)

4. 의견제출

- 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3월 23일까지
 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058, 팩스 055-860-3703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(전화 055-860-305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규칙 제 호

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따른” 을 “따라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군수” 를 “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군의회” 를 “군수가 남해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 라 한다)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” 를 “조례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” 을 “제정·개정·폐지하려는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심의회 위원은 국장, 담당관, 추진단장,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.

제3조제2항(중전의 제1항) 단서 중 “경험” 을 “관하여 경험” 으로, “사람” 을 “변호사·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.

④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 (“의장의 의무”) 를 (“의장의 직무”)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

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남해군 직무대리 규칙」 제2조에 규정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배석하게” 를 “출석시켜 발언하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.
- ③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,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기획감사실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소관실과” 를 “소관부서” 로 한다.

-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실과단소” 를 “부서” 로, “관계실과간” 을 “관계부서 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과간” 을 “부서 간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, 그 실과” 를 “그 부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언” 을 “대하여 발언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부서의 장” 을 “부서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과소, 직속기관의 6급이상” 을 “부서의 6급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담당” 을 “담당팀장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소관부서별” 을 “소관 부서별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3조제2항의 본문 중 추진단장은 「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청사신축추진단의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성격 및 기능) ①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.</p> <p>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,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성격 및 기능) ① -----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군의회</u>에 제출하는 조례안 2. (생략) 3. 주민의 <u>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,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</u> 4. 군수가 <u>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</u> 5. 6. (생략)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군수가 남해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</u>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조례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</u> ----- ----- 4. ----- <u>제정·개정·폐지하려는</u> ----- --- 5. 6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<u>심의회 위원을 군수, 부군수와 본청의 국장, 담당관,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(과장을 포함한다.),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.</u> 다만,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<u>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</u>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<u>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</u>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단서신설 2007.6.15.></p> <p>② <u>심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4조(의장의 의무) ①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② (중전의 제1항) <u>심의회 위원은 국장, 담당관, 추진단장,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.</u> 다만,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<u>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·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</u>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.</p> <p>④ <u>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「남해군 직무대리 규칙」 제2조에 규정된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5조(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<u>배석하게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직속기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회의소집)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례회의는 매주 한 차례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7조(의안제출 및 심사) ① 의장,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. 다만, 직속기관 등이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경우에는 직속 기관장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남해군 직무대리 규칙」 제2조에 규정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5조(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출석시켜 발언하게 ---</p> <p><삭 제></p> <p>제6조(회의소집)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p><삭 제></p> <p>③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,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의안제출 및 심사)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<u>기획감사실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공포안,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<u>소관실과</u>에서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관련 담당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8조(합의)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<u>실과단소</u>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<u>관계실과간</u>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합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례·규칙안은 <u>실과간</u>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써 제출하여야 하며,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대리출석)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<u>간사</u>에게 통지하고, 그 실과의 직근 하급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.</p> <p>②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은 의안에 <u>발언</u>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기획예산담당관</u>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소관</u> <u>부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합의) ① ----- ----- <u>부서</u>----- ----- <u>관계부서 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부서 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대리출석) ① ----- ----- <u>그 부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대</u> <u>여 발언</u>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제안·보충설명) ①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부서의 <u>부서의 장</u>이 하여야 하며, 제·개정취지,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안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<u>실과소, 직속기관의 6급 이상</u>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간사) 심의회에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관련 <u>담당</u>이 된다.</p> <p>제15조(의안 심의결과 처리) ① (생략)</p> <p>② 그 밖의 사항은 <u>소관부서별</u>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제안·보충설명) ① ----- ----- <u>부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부서의 6급 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제13조(간사) ----- ----- - <u>담당팀장</u>-----.</p> <p>제15조(의안 심의결과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소관 부서별</u>----- -----.</p>

남해군 공고 제2021 - 306호

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
2. 개정이유
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
3. 주요내용
 - 가.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
 - 1)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
 - 2)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
 - 나. 띄어쓰기 및 용어 정정
 - 1)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중 ‘법관’을 ‘판사·검사·변호사’로 정정
 - 2) 기타 띄어쓰기 등 정정
4. 의견제출
 - 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3월 24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
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054, 팩스 055-860-3703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(전화 055-860-305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5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” 를 “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3명의 위원은 법관” 을 “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” 로, “풍부한” 을 “있는” 으로, “중에서” 를 “중에서 군수가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남해군의회의원” 을 “남해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 라 한다) 의원” 으로, “위촉” 을 “군수가 위촉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명” 을 “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남해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해군의회” 를 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장 및” 을 “위원장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남해군의 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” 을 “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” 으로, “의회의원 인” 을 “군의회 의원인” 으로, “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” 을 “임명 당시의 직 위에 재직 중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중” 을 “위원 중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사고가 있” 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공무원중” 을 “공무원 중” 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10조 전단 중 “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” 를 “필요” 로, 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” 를 “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5명으로</u>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<u>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 단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3명의</u>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<u>중에서</u> 위촉한다.</p> <p>2. 2명의 위원은 <u>남해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</u>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3명</u>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2호에 따라 <u>남해군의회의원을</u>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남해군의회의 의장의</u>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7명의</u>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. <단서 삭제></p> <p>1. <u>5명의</u>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----- ----- 있는 ----- ----- <u>중에서</u> <u>군수가</u> -----.</p> <p>2. ----- <u>남해군의회의원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 의원</u> ----- <u>군수가 위촉</u> ----- 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5명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군의회</u> <u>의원을</u> <u>위원으로</u> <u>위촉할 때에는</u> <u>군의회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장</u> 및 <u>위원의</u>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장</u> <u>과</u>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남해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</u>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의회의원인</u>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, <u>소속공무원인</u> 경우에는 <u>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</u> 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② <u>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</u>----- ----- ----- <u>군의회 의원인</u> ----- ----- <u>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</u>----- -----.</p>
<p>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위원중</u>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③ ----- <u>위원 중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</u>-----.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(생략) ② 간사는 남해군 소속 <u>공무원중에서</u> 군수가 임명한다.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공무원 중</u>----- -----.</p>
<p>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수당 등) ----- ----- 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<u>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</u>한 사항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으로 “<u>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</u>”는 “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 한다.</p>	<p>제1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----- ----- <u>필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“<u>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</u>” ----- -----.</p>

남해군 공고 제2021 - 317호


공인 등록 공고

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)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3월 4일

남 해 군 수

- 1. 사용 개시일 : 2021. 2. 25.
- 2. 사유
 - 등록 :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
- 3. 등록 공인명·인영
 - 등록

공인명	규격	구분	인영	사용부서
남해군청사신 축추진단분임 재무관인	2.0cm 정사각형	등록		청사신축 추진단
남해군청사신 축추진단일상 경비출납원인	1.8cm 정사각형	등록		청사신축 추진단

끝.

남해군 공고 제2021 - 327호

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5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

2. 개정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전부개정(법률 제17574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

- 1) (당초)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- 2) (변경)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나.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(안 제2조, 제5조, 제14조)

- 1)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규정
- 2)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
- 3) 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 근거 마련

다. 건물번호판·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등(안 제3조)

- 1) 제작비용은 남해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·사물주소판을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로 결정

2)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고시

라. 광고 비용(안 제4조)

1) 광고 비용 무료·유료대상 규정

마.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

1) 도로명주소법 개정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

(당초) 도로명주소위원회 ⇒ (변경) 주소정보위원회

2) (구성)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로 성별 고려, 민간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

3) (운영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

바. 손해배상 공제 가입(안 제13조)

1)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규정

사. 위탁(안 제15조)

1) 건물번호판의 교부·재교부,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

2)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배포,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조치

3)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,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등

아. 토지 등의 출입증(안 제16조)

1) 관련 조문과 출입증 및 발급대장 서식 규정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3월 25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
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남해군청(민원봉사과장)

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475, 팩스 055-860-3733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(전화 055-860-34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

1. 도로명: 모든 도로의 명칭
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
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 외에 남해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초단위
5. 국가지점번호: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
6. 사물주소: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

제3조(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) ① 군수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남해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
2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

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「남해군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(광고의 비용)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료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
 - 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
 - 다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.

제5조(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)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관 등 시설의 설치
2.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·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
4.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
5.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9조에 따른 남해군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담당 국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을 제외한

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

- 1.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
- 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남해군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
- 2.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
- 3.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
- 4.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록 작성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회의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- 3. 토의 및 진행사항
- 4. 위원·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
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 공제 가입)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)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·재교부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배포
- 5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- 6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
 - 7.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8.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관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
 - 9.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10.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-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주소정보시설의 종류, 수량, 위치
 - 2. 계약기간 및 금액
 - 3.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 - 4.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
 - 5. 주소정보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 - 6.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 -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토지 등의 출입증)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남해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.

■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(앞 쪽)

제 호

토지·건물등·시설물 출입증

사 진
3cm×4cm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남 해 군 수

60mm×90mm(백상지 150g/m²)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 쪽)

토지·건물등·시설물 출입증

소속/직급(직위):

성 명:

생년월일:

유효기간: . . .부터 . . .까지

위 사람은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5조 및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·건물등·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남 해 군 수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